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제출연월일 : 2020.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보고이유

-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메르스, 에볼라 등 해외유입 감염병을 최단거리에서 대응하고 있어 감염병의 노출 및 전파기회 증가 등 감염병에 취약한 상태임
- 따라서, 2020년 6월 30일 위탁계약 만료예정인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재위탁(재계약) 하여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활용 및 민·관 협력체계 유지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기존 위탁기간 : 2017. 7. 1. ~ 2020. 6.30.)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재위탁(재계약)을 위해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위탁기간	2년 6개월(2020. 7. 1. ~ 2022. 12. 31.)
위탁방식	재위탁(재계약)
사 업 비	600백만원 범위 내(2020년도)
주요사업	감염병 분석, 현장 역학조사, 교육·홍보 등 감염병 업무 지원

□ 참고 사항

- 붙임 :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의회 보고 계획 1부. 끝.
(관련법령 포함)

-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민간위탁 의회 보고 계획

-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보고)를 얻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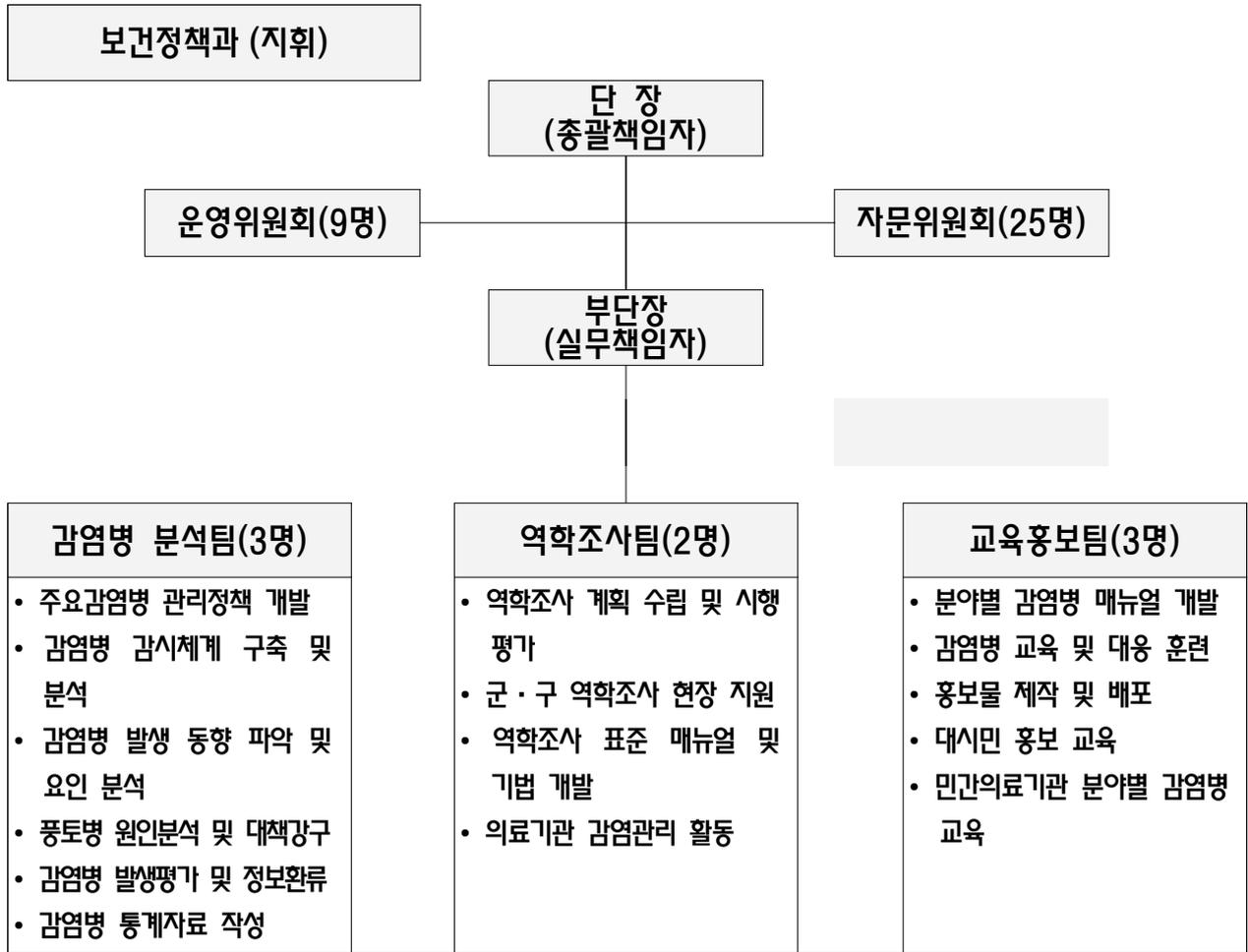
1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인천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등의 구성)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의회 동의 및 보고) 제2항

2 운영개요

- 사업명 :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위탁기간 : 2020. 7. 1. ~ 2022. 12. 31. (2년 6개월)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사업내용 : 감시, 역학조사, 통계분석, 교육·홍보 등
- 운영인력 : 총 10명(단장 1명, 부단장 1명, 3개팀원 8명)

□ 조직도



□ 사업예산(2020년도) : 600백만원(국 50%, 시 50%)

□ 민간위탁 내용

- 인천시 감염병 자료 감시, 분석과 환류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감염병,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사업,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담당자 역량강화 및 교육
- 유사시, 평시 현장 역학조사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
- 인천시 CRE 선도기관 양성 사업으로 의료감염관리, 전파 예방
-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기타 인천광역시 및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사항

□ 주요 사업 추진 내용

○ 감염병 분석 및 환류

- 감염병자료 분석 및 환류, 정례회의 등을 통한 전문가집단 네트워크 구축
- 감염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주요 지표 시각화
- 인천시 호발 감염병에 대한 심층 분석, 분석틀 개발로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근거자료 생성

○ 지역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 타 시도 대비 인구 십만명당 발생률에 있어 부산에 이어 2번째로 높은 CRE 등의 의료기관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사업 수행
- 주기별 신고현황 분석 및 환류, 감염관리실 담당자 교육 수행, CRE 선도기관 양성 사업 등 추진

○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 지자체 실무자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 도모
- 지역내 감염병 취약집단별 맞춤형 교육 대상자들에게 손위생, 소독과 멸균, 전파경로별 감염관리 교육 수행
-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 소방서, 검역소 등의 직·간접적인 유관기관 및 서울·경기 등의 인접지역과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유사시 공동대응 능력 강화

□ 그동안 연도별 추진 실적 및 2020년도 운영계획

○ 기존 위탁기간 : 2017. 7. 1 ~ 2020. 6. 30

○ 위탁기간 연도별 추진실적 및 2020년 운영계획

연도	추진실적			계획
	2017(하반기)	2018	2019	2020
사업비(천원)	300,000	611,250	612,666	600,000
집행액(천원)	273,698	553,116	558,747	-
주요 추진성과	전문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관리우선순위도출 및 위험도평가	감염병 신고자료 주간, 월간, 분기별 분석 및 환류	감염병 신고자료 주간, 월간별 분석 및 환류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감염병 신고자료 주간, 월간 분석 및 환류	CRE 신고현황 주간, 월간, 분기별 분석 및 환류	CRE 신고현황 주간, 월간별 분석 및 환류 CRE 선도 기관 양성
	CRE 심포지엄개최	CRE/OPE 주간 신고 현황분석 및 환류	주간소식지(ICDC Weekly) 발행	주간소식지(ICDC Weekly) 발행
	현장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홈페이지구축	학교관리자·감염병 담당교사 교육	감염병 DB 구축 및 시각화	감염병 데이터 시각화
	감염병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장역학조사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	현장역학조사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	현장역학조사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
	감염병 위기대응 지원	역학조사 연보 발간	역학조사 연보 발간	역학조사 연보 발간
	감염병자료 분석 및 환류(정례회의 개최)	의료관련감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의료관련감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의료관련감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인천시 신종감염병 교육훈련센터 운영	신종감염병 역량강화 교육훈련 체계화
	-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 역량강화 및 교육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 역량강화 및 교육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 역량강화 및 교육
	-	지역사회 감염병 홍보	지역사회 감염병 홍보	인천광역시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사업
	-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언론모니터링 및 시군구 감염병 담당자 영상회의)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언론모니터링 및 시군구 감염병 담당자 영상회의)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언론모니터링 및 시군구 감염병 담당자 영상회의)

4

향후계획

- 안전 공문 제출 : 2020. 1. 13.(월)
- 안전 인쇄물 제출 : 2020. 1. 15.(수)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참고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3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인천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등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이하 “본부” 라 한다), 감염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본부, 감염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부, 감염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3(의회 동의 및 보고) 제2항

① 시장은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